



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

수신자 전 회원사
(참 조)

제 목 **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안내 (차 령)**

1. 전세연 제2020-160호(2020.07.14.)와 관련입니다.

2.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의 차령을 아래 대상 차량에 대하여 임시검사를 받아 적합한 차량에 대해 차령을 1년 더하여 인정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(안)이 재입법 예고되었기에 안내해 드립니다.

= 아 래 =

가. 대상차량 : 차령기산일이 2009.9.1. ~2012.6.30. 까지인 자동차로서
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
적합한 차량

나. 시행일(예정) : 2020년 9월 1일

※ 이 영 시행 당시 차령연장 기간이 1년 10개월 이후인 자동차는
시행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임시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.

(붙임자료 참조)

붙임 : 여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사본 1부.

※붙임자료는 조합홈페이지(www.tourbus.or.kr)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. [끝]

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



담 당 박영수 부 장 라영석 실 장 박호동 전무이사 박태환

협조자

시행 서전버조 20- 193호 (2020.07.14) 접수 ()
우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 (교통회관 11층) / <http://www.tourbus.or.kr>
전화 02-422-0019 전송 02-418-0071 / / 공개

"안전띠는 생명띠 정지선은 생명선"